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3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낮은 0.59명으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나, 대기인원 등의 문제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임.
- 이에 현행 조례의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명시함(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있다”를 “있도록 하고,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 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 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② ----- ----- ----- ---. ----- ----- ----- ----- ----- ----- <u>있도록 하고, 미취학아 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 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 시까지로 하며, 부모 모두 공무 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된다.</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근무시간 등)제2항을 변경·신설하여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규정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